

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(2021년 이후 신규 채용자 4대 보험료 지원)

□ 지원대상

-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 만족 시 해당자에 한해 4대 보험료 일부 지원
- 근로자 요건
 - 2021년 신규 채용자 중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
 - 2021년 이전부터 경상남도 내 거주지를 둔 자
 - 세전 월급 220만원 미만(식대, 교통비 등 비과세 제외 금액)

□ 지원내용

- 최대 6개월 간 기업규모별 차등지원 (2021년 1월~11월 중 지급신청기간 선택)

(두루누리사업, 일자리안정자금,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지원 가능)

규 모	지원내용
10인 미만	두루누리 사업 지원자 : 건강보험, 산재보험의 20% 두루누리 사업 미지원자 : 사회보험료(건강, 국민, 고용, 산재) 총액의 50%
10인 이상 50인 미만	사회보험료(건강, 국민, 고용, 산재) 총액의 50%

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예산 소진 시까지
- 신청방법 : 제출서류 이메일 (twd3385@gnepa.or.kr), Fax (055-230-2919),

우편 접수가능

* 우)51408,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, 창원컨벤션센터 1층 (재)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

□ 문 의 처

- (재)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 ☎ 055-230-2941~2
- 공고문 확인 : 경상남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(gnepa.or.kr) → 사업공고

□ 제출서류

- ① 4대 보험료 사업주 확인서(근로자 1인당 1장) (별지 1호)
 - ② 『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』 지원신청서(별지 2호)
 - ③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(근로자, 사업주 각 1장) (별지 3호)
 - ④ 사업자 등록증
 - ⑤ 근로계약서
 - ⑥ 노동자 임금대장 (최근 1달 만근한 내역)
 - ⑦ 노동자 주민등록등본
 - ⑧ 2021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(근로자용)
 - ⑨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기간설정 : 2020/1/1 ~ 현재)
- * ⑧, ⑨번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·신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가능 (tel : 1588-0075)

□ 지급절차

